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성준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9267

발의연월일: 2025. 3. 21.

발 의 자:진성준·윤종군·김태년

서미화 · 박홍근 · 윤준병

박해철 • 문진석 • 권향엽

손명수 · 이재관 · 김한규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의 기업활동에 대한 세제지원책은 '투자'와 '고용'에 방점이 찍혀 있었고, 이 중 '투자'는 '설비투자'를 통한 생산능력 향상에만 초점을 맞추었던 까닭에 1968년 도입된 '투자세액공제' 제도(투자액의 일정률을 법인세에서 공제)가 근간이 된 채 현재까지 유지되어 오고 있음.

그러나 기업이 과거에는 낮은 인건비를 이유로 중국·동남아로, 최근에는 미국IRA 및 관세 문제를 이유로 미국으로 이전을 고민함에 따라 국내 생산기지는 공동화되고 이로 인한 국내 일자리 감소가 지속적으로 심화되는 문제가 있으므로, 기업의 국내 생산을 장려하기 위하여 생산세액공제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음.

이에 전략산업제품 생산에 대하여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고, 일정한 경우에는 공제액을 환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100조

의35 및 제100조의36 신설 등).

법률 제 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장에 제10절의6(제100조의35 및 제100조의36)을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

제10절의6 생산촉진을 위한 조세특례

제100조의35(전략산업 국내생산세액공제) ① 신성장·원천기술, 국가전략기술,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첨단기술을 활용한 제품(이하 이조 및 제100조의36에서 "전략산업제품"이라 한다)에 관한 생산업을 영위하고 있는 내국인이 국내에서 전략산업제품을 최종 생산한 후 2035년 12월 31일까지 국내에 판매하는 경우에는 최초로 판매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9년 이내에끝나는 과세연도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전략산업 제품 판매가격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제품이판매된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공제받는 금액이 해당 과세연도의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20

- 을 한도로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는 판매된 전략산업제품이 국내에서 최초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③ 해당 과세연도 이전에 제24조에 따른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은 자산의 감가상각비를 해당 과세연도에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같은 조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 중 그 감가상각비에 상당한 투자액에 대하여 공제받은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제1항에 따라 공제받는 금액에서 차감한다.
- ④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략산업제품 생산 수량 및 판매가격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세액공 제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⑤ 제1항의 전략산업제품의 국내 최종 생산·국내 판매의 인정 범위, 제3항의 차감 금액의 계산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00조의36(전략산업 국내생산세액공제 환급 특례) ① 해당 과세연도 및 직전 2개 과세연도에 「소득세법」 제19조제2항 및 「법인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결손금이 발생한 내국인이 수도권과밀억 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생산한 전략산업제품(국가전략기술을 활용한 제품으로 한정한다)에 대하여 제100조의35에 따라 공제할 세액 중해당 과세연도에 납부할 세액이 없어 공제받지 못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미공제금액"이라 한다)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51조를 준용하여 환급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환급세액에 대해서는 「국세기본법」 제52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③ 제1항에 따라 미공제금액을 환급받으려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환급신청을 하여야한다.
- ④ 내국인이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미공제금액을 환급받은 경우에는 그 미공제금액에 대하여 제144조에 따른 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⑤ 제1항을 적용할 때 미공제금액의 계산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7조에 제1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내국인이 동일한 과세연도에 제24조 및 제100조의35에 따른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공제규정이 동시에 적용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

제144조제1항 중 "제99조의12"를 "제99조의12, 제100조의35"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99조의12"를 "제99조의12, 제100조의35"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전략산업 국내생산세액공제 및 환급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00 조의35 및 제100조의36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 연도에 판매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제10절의6 생산촉진을 위한 조세	
	<u>특례</u>	
<u><신 설></u>	제100조의35(전략산업 국내생산	
	세액공제) ① 신성장・원천기	
	술, 국가전략기술, 또는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첨단기술을 활	
	<u>용한 제품(이하 이 조 및 제10</u>	
	0조의36에서 "전략산업제품"이	
	라 한다)에 관한 생산업을 영	
	위하고 있는 내국인이 국내에	
	서 전략산업제품을 최종 생산	
	한 후 2035년 12월 31일까지	
	국내에 판매하는 경우에는 최	
	초로 판매한 날이 속하는 과세	
	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	
	시일부터 9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전략산	
	업 제품 판매가격의 100분의 1	
	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제	
	품이 판매된 과세연도의 소득	
	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	

제한다. 다만, 공제받는 금액이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20을 초과하 는 경우에는 100분의 20을 한 도로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는 판매된 전략산업제품이 국내에 서 최초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 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③ 해당 과세연도 이전에 제24 조에 따른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은 자산의 감가상각비를 해당 과세연도에 손금으로 계 상한 경우에는 같은 조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 중 그 감가상각 비에 상당한 투자액에 대하여 공제받은 금액에 상당하는 금 액을 제1항에 따라 공제받는 금액에서 차감한다.
- ④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 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 에 따라 전략산업제품 생산 수 량 및 판매가격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세액공제신청서를 제출 하여야 한다.

<신 _설>

⑤ 제1항의 전략산업제품의 국 내 최종 생산·국내 판매의 인 정 범위, 제3항의 차감 금액의 계산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0조의36(전략산업 국내생산 세액공제 환급 특례) ① 해당 과세연도 및 직전 2개 과세연 도에 「소득세법」 제19조제2 항 및 「법인세법」 제14조제2 항에 따른 결손금이 발생한 내 국인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의 지역에서 생산한 전략산업 제품(국가전략기술을 활용한 제품으로 한정한다)에 대하여 제100조의35에 따라 공제할 세 액 중 해당 과세연도에 납부할 세액이 없어 공제받지 못한 금 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 이 조에서 "미공제금액" 이라 한다)에 대하여 「국세기 본법 제51조를 준용하여 환 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환급세액에

 대해서는 「국세기본법」 제52

제127조(중복지원의 배제) ① ~ ① (생략) <신 설>

제144조(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 제144조(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

① 제7조의2, 제7조의4, 제8조

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③ 제1항에 따라 미공제금액을 환급받으려는 내국인은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 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환급신 청을 하여야 한다.
- ④ 내국인이 제1항부터 제3항 까지에 따라 미공제금액을 환 급받은 경우에는 그 미공제금 액에 대하여 제144조에 따른 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를 적용 하지 아니한다.
- ⑤ 제1항을 적용할 때 미공제 금액의 계산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27조(중복지원의 배제) ① ~ ① (현행과 같음)
 - ① 내국인이 동일한 과세연도 에 제24조 및 제100조의35에 따른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공 제규정이 동시에 적용될 수 있 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
- 1 -----

의3, 제10조, 제12조제2항, 제12 조의3, 제12조의4, 제13조의2, 제13조의3, 제19조제1항, 제24 조, 제25조의6, 제25조의7, 제26 조, 제29조의2부터 제29조의5까 지, 제29조의7, 제29조의8, 제30 조의3, 제30조의4, 제96조의3, 제99조의12, 제104조의5, 제104 조의8, 제104조의14, 제104조의 15, 제104조의22, 제104조의25, 제104조의30, 제104조의32, 제1 22조의4제1항, 제126조의6, 제1 26조의7제8항 및 법률 제5584 호 조세감면규제법개정법률 부 칙 제12조제2항, 제12조의3, 제 12조의4(종전 제37조의 개정규 정만 해당한다)에 따라 공제할 세액 중 해당 과세연도에 납부 할 세액이 없거나 제132조에 따른 법인세 최저한세액 및 소 득세 최저한세액에 미달하여 공제받지 못한 부분에 상당하 는 금액은 해당 과세연도의 다 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10년 이내에 끝나는 각 과세연도에 이월하여 그 이월된 각 과세연

제99조의12, 제100조
<u>의35</u>

도의 소득세[사업소득(제96조의 3 및 제126조의6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45조 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포함한다)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② 각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할 금액으로서 제7조의2, 제7조의4, 제8조의3, 제10조, 제12조제2항, 제12조의 3. 제12조의4. 제13조의2. 제13 조의3, 제19조제1항, 제24조, 제 25조의6, 제25조의7, 제26조, 제 29조의2부터 제29조의5까지, 제 29조의7, 제29조의8, 제30조의3, 제30조의4, 제96조의3, 제99조 의12, 제104조의5, 제104조의8, 제104조의14, 제104조의15, 제1 04조의22, 제104조의25, 제104 조의30, 제104조의32, 제122조 의4제1항, 제126조의6, 제126조 의7제8항 및 법률 제5584호 조 세감면규제법개정법률 부칙 제 12조제2항(종전 제37조의 개정

②
제99조의12, 제100조의
<u>35</u>

규정만 해당한다)에 따라 공제할 금액과 제1항에 따라 이월된 미공제 금액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이월된 미공제 금액을 먼저 공제하고 그 이월된 미공제 금액 간에 중복되는 경우에는 먼저 발생한 것부터 차례대로 공제한다.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